

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피해상담 및 신고센터 안내

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피해상담 및 신고센터는 학교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폭언, 폭행, 성희롱(성폭행),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담 및 신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※ 피해상담 및 신고 시 주의사항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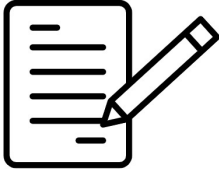



- 피해상담 및 신고센터(1670-0144) 상담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.
- **피해상담 및 신고 항목 외 내용, 비방, 욕설, 장난(허위)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.**
- 실명을 원칙으로 합니다.

□ 피해상담 및 신고 항목

항 목	내 용
직장 내 성희롱	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성폭행	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
직장 내 괴롭힘	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
폭언	인격적 모욕감·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
폭행	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신체의 사유를 침해하는 행위

※ 폭언, 폭행의 경우 피해상담 및 신고센터 또는 인권침해 구제절차로 접수 가능

□ 피해상담 및 신고 절차

<p>① 피해상담 및 신고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피해상담 및 신고센터 연락 ☎ 1670-0144 ☎※ 피해상담 및 신고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, 성폭행, 직장 내 괴롭힘, 폭언, 폭행만 접수 가능 그 외 내용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콜센터(1600-0144)로 연락
▼	
<p>② 신고서 제출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신고서(양식) 작성 및 이메일 제출 - 제출처: art@arte.or.kr
▼	
<p>③ 사실관계 조사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신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조사 실시※ 신고인(본인)이 조사 중지를 희망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조사중인 경우 조사 중지
▼	
<p>④ 위원회 심의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위원회 소집 및 심의
▼	
<p>⑤ 결과 안내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심의 결과 안내

□ 기타사항

- 인권침해(차별, 자유권 보장, 폭력, 노동권 등)의 경우 “인권침해 구제절차” 로 신고 [☞ 바로가기 클릭](#)
- 일반민원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콜센터(1600-0144) 또는 지역운영 기관으로 문의